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9-219 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'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'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년 3월 5 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용어 개정에 따라 장애인가정의 출산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구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수정

- (제4조) '장애등급 1~3급' → '장애정도가 심한 장애' 로 용어 수정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(참조 : 사회복지장애인과 전화 : 02-450-7534, FAX: 02-3425-1734, E-mail : jjy9253@gwangjin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,
성명(단체·법인의 경우 단체명·법인명과 그 대표자)